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 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편집자 주]

이번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지난해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을 망라하는 범정부적 동반성장 추진대책으로 공공부문이 주요 경제활동 주체로서 동반성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행방안이다.

정부는 △공공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공공부문의 적극적 실천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 선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계획이다.

■ 대·중소 동반성장 실천계획

① 공공계약에 중소기업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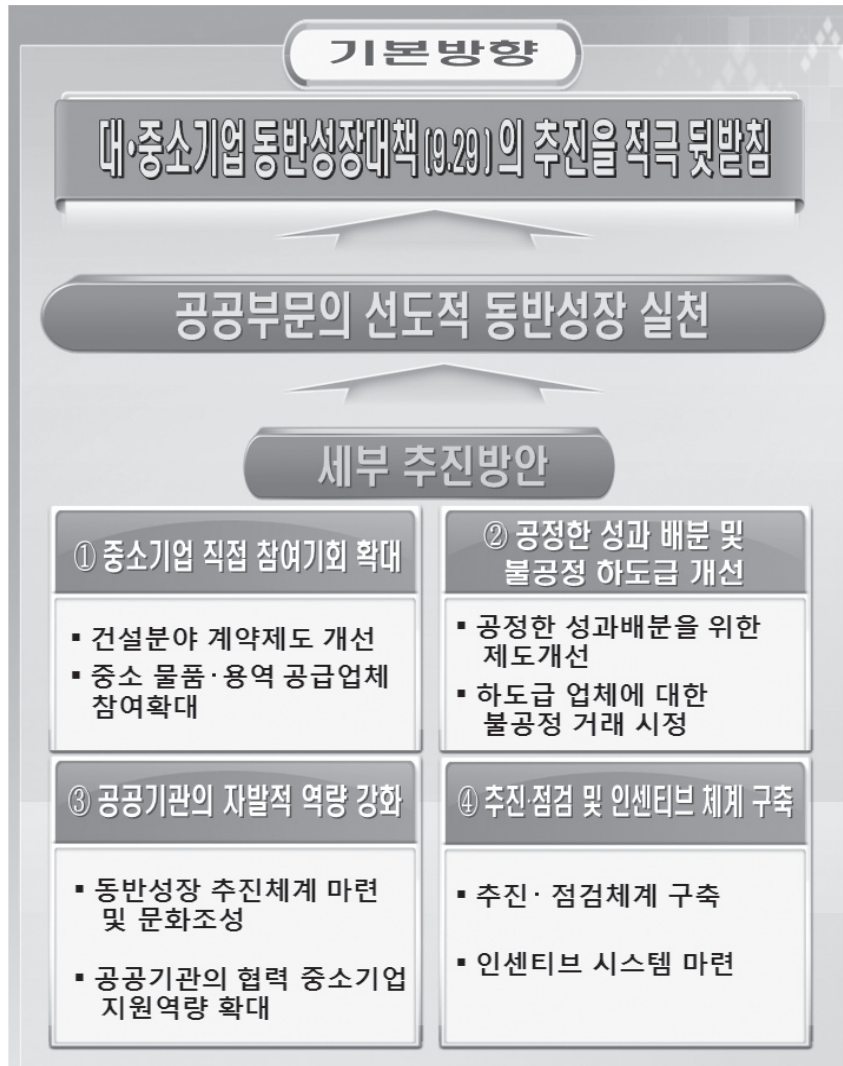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② 공정한 성과배분과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기능 강화
- ③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반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유도
- ④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동반성장 실천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대·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점검으로 동반성장을 산업 생태계의 新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1.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방안



1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

- ◇ 건설분야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 중소기업의 납품기회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중기제품 구매 활성화

1. 건설 분야 계약제도 개선

- 1)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활성화(기재부, 국토부)
 - ① 중소·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 제도(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 기관을 4개 기관(현재 1개 기관(LH 공사)에서 2011년 철도공

단, 수공, 도공 등 3개 기관 추가]으로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발주자가 종합(주계약자)·전문(부계약자) 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제도

② 일정 규모(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제한 없이 전면 확대 적용('11년까지 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란?

지역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및 고시 개정('11.2월)

③ 턴키 입찰시 낙찰자 선정 이전이라도 발주기관 귀책에 의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설계보상비를 지급

* 현재 입찰탈락자중 설계우수자에 대해,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설계보상비 지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1.3월)

2) 대형건설사 입찰참여 하한액 상향 조정(국토부)

①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현행 150억원) 상향 조정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10.12월)

3) 법령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분리발주 활성화(기재부, 국토부)

① 기관별 특성, 공사의 성격 등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 심의위원회 등

을 통해 법적 요건에 따른 분리발주 가능성 우선 검토

* 현행, 하자책임구분이 용이,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분리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리발주 허용 (국가계약법시행령 68조, 지방계약법시행령 77조)

☞ 회계예규 개정('11.6월)

2. 중소 물품·용역 공급 업체 참여 확대

1)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실적점검 내실화(중기청)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2년까지 100조 원으로 확대

(단위 : 조원)

| | | | | |
|-----------|------|------|------|------|
| 중기제품 공공구매 | 2009 | 2010 | 2011 | 2012 |
| | 63.4 | 77.2 | 85.0 | 100 |

②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 | | |
|------------------|------|------|------------------------|
| 2010 현재 | 2011 | 2012 | 비고 |
| 주요 205개 기관만 점검 중 | 283 | 494 | 판로지원법시행령 개정(2010. 12월) |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활성화(조달청, 중기청)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코너를 별도 구분, 설치하여 구매 담당자의 인지도 제고('11.6월)

* 현행, 나라장터 기술인증물품물에 기술개발 우선구매 대상 제품 외에 특허실용신안·GD·KS·K마크 제품이 혼재하여 수록됨으로써 공공기관 담당자의 혼란 초래

②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

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론에 대한 신·기보 보증 도입('11.6월)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구매 계약서를 담보로 일반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운전자금

3) SW 용역 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지경부)

- ① SW 용역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별 분리발주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
- * 현행, 공공부문에 대해 HW와 SW간 분리발주 의무화(SW산업진흥법)

2)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 ◇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국가계약 제도 개선
-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발주자의 역할 강화

1. 공정한 성과배분 체계 확립

1)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지나친 저가 낙찰 보완(기재부)

최저가 낙찰제
현행 대상공사 300억원 이상 → '12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10.7월 국가계약법개정)

- ① 발주 공사를 세부 단위공사(工種)로 구분, 공종별 입찰가의 적정성을 발주기관이 내실있게 심의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적정 하도급을 보장
- *예시 : 전기설비, 배관, 난방, 토공, 공조 등

- ② 선금수령 사실 통보 및 선금 직불제도 도입(기재부)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
 -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회계예규 개정

2) 표준품셈 할증 제도 실효성 강화(기재부)

표준품셈이란?
단위 공사량(도로 1m, 블록쌓기 1m³) 당 소요되는 표준 공사비

- 예산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규모 공사 표준품셈 할증제 활용을 촉진하여 적정 공사비 보장

표준품셈 할증제란?
10m²이하 소규모 공사 등에 표준품셈 적용시 작업여건, 공사규모에 따른 할증(최대 50%)을 허용하는 제도

- 공공기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할증제 적용 필요성 심의

2.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개선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활성화(국토부, 지경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란?
선금 또는 기성금이 2차 이하 하도급 업체에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회계예규)

- 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공공부문이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 실시
- ②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지급확인제 확대 적용(기재부, 지경부)
 - 현재 건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부문의 SW 발주사업(2010년도 공공부문 사업규모 : 1조6,493억원)에도 확대 도입
 - 현행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용역 서비스 및 물품 제조의뢰 계약까지 확대 적용
- ③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촉진(기재부, 지경부)
 -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공공부문 SW 서비스 용역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표준 계약서' 마련·배포
 - 수주이후 협력기업을 타 업체로의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문서로 해당기업과 발주기관에 각각 통보토록 의무화
 - ☞ SW산업진흥법 개정('11.6월) 및 시행규칙 개정('11.6월)

3 공공기관의 자발적 역량 강화

- ◇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인식 전환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
- ◇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 강화 및 협력사 지원 강화

1. 동반성장 추진체계 마련 및 문화 조성

- 1)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지경부, 국토부 등)
 - ①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2010. 9.29대책을 통해 구성키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하여 모범사례 발굴과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
 - 「공공기관 동반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role model)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확산
- 2) 기관내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보강(기재부, 지경부, 국토부 등)
 - ①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동반성장 실천계획 수립,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동반성장 업무 전담 추진
 - ② 필요시 기관별 동반성장 관련 인력 증원 적극 검토('11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에 반영 추진)
- 3) 내부 평가·감독 시스템 구축(기재부, 지경부, 국토부 등)
 - ① 임·직원의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개인별 성과평가·포상 등에 반영
 - ② 공공기관의 감사·비상임 이사가 내부감사 및 이사회를 통해 불공정·부당거래를 적극 견제하도록 유도
 - * 공공기관 내부 감사 매뉴얼 또는 비상임이사 업무 매뉴얼에 반영

2. 공공기관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 1) 계약단가의 적극적 조정으로 공정한 계약금액 보장
 - ① 물가 및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검토

- * 현행, 물가 또는 원자재價가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 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 조정 필요시 계약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통보

2) 자금 및 인력 지원

- 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 까지 확대하여 지급(법정 의무지급비율 : 공사규모별 30~50% 이상)
- ②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네트워크론, 파트너쉽론 등) 및 공공구매론(공공구매 계약서를 담보로 제품 생산자금 대출) 확대
- ③ 현행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협력업체 임직원과 인사교류 실시

3)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교육

-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발굴 등 중소기업 기술협력 투자 확대
- ② 특허권 許與협약 체결을 통한 상용화 지원 등 공공기관의 보유 특허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공유 확대
- ③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과정 신설·운영

4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1. 추진·점검체계 구축

- 1)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상황 점검(지경부 등 관계부처)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하여「동반성장 추진 점검반」(반장:경제수석)에 보고

- 2) 국무회의에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이행실적 보고 방안 추진(지경부 등 관계부처)

- 3)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10.12월 구축)를 통한 공공부문 거래 관련 애로 접수·처리(지경부)

- ① 공공부문 거래관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인터넷 접수하고 소관부처 검토를 통해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에 시정 권장
- ② 공공기관(대·중소상생법협력법상 동반성장 평가 대상인 56개 공공기관)의 경우 처리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경부)에 반영('11.6월)

2.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 1)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기재부, 지경부)

이를 위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이행 실적 평가기준 마련('10,12월)

- 2) 동반성장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구매 담당자에 대해 포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 포상 등) 방안 검토